

고 발 장

고 발 인 이 승 회

권 진 관

이 동 출

박 현 용

황 정 아

피 고 발 인 이 형 구

이 철 수

박 기 진

이 종 연

신 광 식

김 시 형

우 찬 목

장 명 선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장

- 고 발 인
1. 이 승 희 대표 고발인
 2. 권 진 관
 3. 이 동 출
 4. 박 현 용
 5. 황 정 아

(이상 연락처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참여연대))

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번호 : 796-8364 전송 : 793-4745

- 피 고 발 인
1. 이 철 수 (전 제일은행장)
 2. 박 기 진 (전 제일은행장)
 3. 이 형 구 (전 산업은행 총재)
 4. 이 종 연 (전 조흥은행장)
 5. 신 광 식 (제일은행장)
 6. 김 시 형 (산업은행 총재)
 7. 우 찬 목 (조흥은행장)
 8. 장 명 선 (외환은행장)

고발인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소속의 시민들이고, 피고발인들은 대출·지급보증 등 한보그룹에 대한 기업여신을 관리한 은행들의 전·현직 은행장들입니다. 고발인들은 최근의 한보철강 부도사태와 관련하여 시민으로서 의분을 참을 수 없어 피고발인들을 다음과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여 의법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고 발 취 지

작금의 한보철강의 부도사태를 바라보면서, 고발인들은 제일은행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유수의 은행들이 한보철강에 대출등 여신행위를 함에 있어 실정법에 비추어보나 금융관행 등 상식적으로 보나 납득이 가지 않는 위법의 부실대출행위를 한데 대해 은행을 믿고 예금하는 시민으로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기업여신은 그 규모의 거대함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은행 자체의 중립적이고 정밀한 심사를 통해 엄격히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은행에서 단돈 1000만원을 대출받으려 해도 담보와 신용에 관한 엄격한 조건과 조사절차가 까다로운데, 하물며 국민 경제를 이끌어가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엄청난 규모의 부실여신이 이루어졌다는데 케케시 크바이트이 이휴이 프키 아이 스 여스기리 뿐만아니라 은행들의 불량여신으로 인한 타격은 부도기업과 협력업체의 주주들, 국민 혈세에 의한 부도기업의 세제지원 및 관련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에 의해 결국 전체 국민들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울분을 참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정경유착에 의한 대출과 부실여신에 의해 대형 경제사고가 발생한 것이 한두번이 아닌 상태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에 한해서만은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따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엄중히 수사하시어 의법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범 죄 사 실

금융기관의 임원은 금융기관의 공익성을 꾀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신용질서를 해쳐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으며(은행법 제14조 제2항), 해당 금융기관이 부실대출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무를 다하여 그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나아가 당해은행의 예금주들에 대하여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금융 업무를 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이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이미 1995년경부터 이상조짐을 보이던 한보철강에 대해 정밀한 여신 심사 없이 회수불능의 막대한 금원을 대출함으로써 한보철강을 비롯한 한보그룹은 막대한 이득을 얻은 반면 해당은행과 예금주들은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첫 째, 매출액 증가를 훨씬 뛰어넘는 여신을 제공하였습니다.

한보철강의 지난 4년간 매출액은 겨우 3백69억원 늘어난 데 비해 은행 총여신은 3조1천9백81 억원으로 늘어나, 여신증가속도가 매출증가보다 86배 됩니다. 매출액 규모는 회사의 성장속도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때, 이러한 여신행위는 결국 한보그룹을 위해 해당은행과 예금주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 둘째, 담보도 확보 안 된 대출행위를 하였습니다.

1997년 1월 10일 현재 한보철강의 은행여신 3조4천7백67억원 가운데 담보가 확보되지 않은 것은 7천8백27억원에 이릅니다. 담보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우리나라의 금융풍토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상식에도 반하는 대출행위로서 명백한 배임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 셋째, 부실징후기업이 역력한 한보철강을 부실기업으로 선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대출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영업실적이나 부채상환능력 또는 재무구조 어느 면에서나 부실의 조짐이 역력했던 한보철강에 대해 피고발인들은 회수불가능한 대출을 해준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은 동일인 여신한도라는 은행법상의 규제를 통해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신탁대출을 통해 총대출의 50%에 육박하는 과도한 편법대출을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여신의 주요기준으로서의 안전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보그룹을 돕기위해 피고발인들이 안간힘을 다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피고발인 이철수는 제일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1994년 1월과 1995년 9월 한국신용정보(주)에 한보철강에 대한 사업성 평가 의뢰를 한 결과 위험하다는 결론을 통지받고도 이를 묵살한 채 거액의 여신을 강행함으로써 제일은행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도 대출에 적극 나서 배임행위를 저질렀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고발인들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4천억원의 협조융자를 실시키로 하고 1천억원씩 나누어 일사불란하게 지원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피고발인들 사이에 상호 사전 공모에 의한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위 피고발인들은 이미 대출당시부터 회수불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였거나 백보를 양보하여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불량, 부정의 대출행위를 감행하였던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한보철강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고 해당은행과 예금주들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입니다.

또한, 위 피고발인들이 오랜 세월을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일반 대출의 법률적 규제와 금융기관의 관행을 모를 리 없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행위는 명백히 해당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여신관리를 은행의 중립적이고 정밀한 자료에 의존하기는 커녕 정부의 의견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경제를 더욱 황폐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부도기업 및 관련기업에 세제혜택, 자금지원 등을 국민의 혈세에 의해 함으로써 개별 국민에게도 계산할 수 없는 피해를 끼쳐 국민에 대해서도 배임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하여 위와 같이 고발하오니, 피고발인들을 엄정히 수사 및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997 년 1월 31일

위 고발인 이 승 희 (인)

권 진 관 (인)

이 동 출 (인)

박 현 용 (인)

황 정 아 (인)

서울지방검찰청 귀중